

일상돌봄 서비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일상돌봄서비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연령(출생년도)	19 ~ 64세	13~39세
가구	없음	돌봄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실질적 동거)
육구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가족돌봄 청년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자녀 해당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기간 : 6개월(재판정 5회)
- 방법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 돌봄 및 신체 일상지원 서비스(웃입기, 식사도움, 신체청결, 안전관리)
- 가사지원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서비스 제공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동행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및 병원 접수·수납지원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	특화
재가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서비스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특화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 ~ 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③ 서비스 이용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카드사 또는 정보원



④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계약 직접 체결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



⑤ 서비스이용

정부지원금 바우처 카드 결제



⑥ 서비스종료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시 종결 상담



서비스 가격

기본
(단위 : 원)

특화
(단위 : 원)

서비스명	바우처 총액 (월 한도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A형 돌봄·가사 월 36시간	648,000	수급자, 차상위	연제	648,000
		120% 이하	64,800	10% 583,200
		120~160%	129,600	20% 518,400
		160% 초과	648,000	100% 0
C형 돌봄·가사 월 72시간	1,296,000	수급자, 차상위	연제	1,296,000
		120% 이하	129,600	10% 1,166,400
		120~160%	259,200	20% 1,036,800
		160% 초과	1,296,000	100% 0
B-1형 가사만 월 12시간	216,000	수급자, 차상위	연제	216,000
		120% 이하	21,600	10% 194,400
		120~160%	43,200	20% 172,800
		160% 초과	216,000	100% 0
B-2형 가사만 월 24시간	432,000	수급자, 차상위	연제	432,000
		120% 이하	43,200	10% 388,800
		120~160%	86,400	20% 345,600
		160% 초과	432,000	100% 0

서비스명	바우처 총액 (월 한도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영양 관리	257,000	수급자, 차상위	12,850	5% 244,150
		120% 이하	51,400	20% 205,600
		120~160%	77,100	30% 179,900
		160% 초과	257,000	100% 0
병원 동행	240,000 (시간당 15,000원)	수급자, 차상위	12,000	5% 228,000
		120% 이하	48,000	20% 192,000
		120~160%	72,000	30% 168,000
		160% 초과	240,000	100% 0
심리 지원	240,000	수급자, 차상위	12,000	5% 228,000
		120% 이하	48,000	20% 192,000
		120~160%	72,000	30% 168,000
		160% 초과	240,000	100% 0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④ 건강보험증(서비스 신청자 등재)
- ⑤ 신청인 신분
- ⑥ 서비스 신청자 유형(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별 증빙서류 (※하단 표 참고)

공공·민간 기관 추천서 제출시

- ① 공공·민간기관 연계추천서, 연계동의서
- 돌봄필요증명서 없거나 예외승인 필요 시
- 기관/읍면동 추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자유형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 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아래 중 1개 ① 진단서·소견서 등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기타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진단서, 소견서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당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하거나 곤란함 명시 필요	아래 중 1개 ① 주민등록상 1인가구 ②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채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아래 중 1개 ①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소견서 등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①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증빙(실질적 동거 포함)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